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 05. 1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21. 03. 03. 유영주, 최재란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 03. 04.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보고 드림(의안번호 제2580호).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으로 하는 호를 신설함(안 제12조제3항2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

라. 기타

1) 개정안 : 별 첨

2) 조례안 예고 : 2021. 3. 5. ~ 2021. 3. 9.

5. 검토의견(전문위원 신훈)

○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제3항제2호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구성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2명을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함.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안 제12조제3항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③ (생 략)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③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생 략)	3. (현행과 같음)
3.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설치토록 하였으며, 구민의 대변자로서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양천구의회 의원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종로, 노원, 구로, 금천, 강남구 등 5개 의회에서도 조례에 명시함.

관계법령 발췌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 6.>

1.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 7. 6.>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

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개의(開議) 요건 및 의결 요건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